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5. 2015고합282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상현(기소), 박하영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다임 담당변호사 김태영

【주문】

]

- 1.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.
- 2. 다만,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3.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분말 0.91g(비닐피 포함, 증 제1호),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정(증 제2호), 대마로 추정되는 녹갈색 건초 2.1g(비닐피 제외, 증 제3호), 대마로 추정되는 녹갈색 건초 0.75g(비닐피 제외, 증 제4호), 성분 미상의 빨간색 캡슐 1정(증 제14호), 성분 미상의 빨간색 캡슐 1정(증 제17호), 필로폰 흡입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 8개(증 제33호), 필로폰 흡입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기구 8개(증 제34호)를 몰수한다.
- 4. 피고인으로부터 28만 원을 추징한다.
- 5. 위 추징금에 해당하는 돈의 가납을 명한다.
- 6.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흥분제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의 점은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